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정부 출연 근거 마련〉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92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6.
3. 회부연월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 근거는 삭제하는 내용임(안 제51조제5항 및 제7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 ④ (생략) <u><신설></u>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u>
<u>⑤</u> (생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⑥</u> 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⑦</u> ----- -----.
<u>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u>	<u><삭제></u>
<u>2. 3.</u> (생략)	<u>1. 2.</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u>⑦ ⑧</u> (생략)	<u>⑧ 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연구원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2005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반면¹⁾ 연구

1) 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49개 연구개발목적기관 중 유일하게 출연 법적 근거가 없음(참고자료).

원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

연도	내용
2019년 국정감사	지재원은 국내 유일 지식재산 연구기관으로 보조금 예산을 받고 있으나 기관운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경영상 휴직, 승진 적체 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족 예산 충당을 위해 과도한 연구용역 수행으로 기관 본연의 기능이 제한되고 있어 지재권 브레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u>특허청 차원의 지원방안 필요</u>
2021년 국정감사	지재원은 중장기 국가지식재산전략을 개발해 온 정책연구기관으로 그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한편, 연구개발 목적기관임에도 출연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해 경영난 및 인력난에 허덕이는 실정, 선도적 지식재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u>지원방식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필요</u>
2022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연구개발목적기관 75개 중 한국지식재산연구원만이 출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u>출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u>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기획예산처)

연도	내용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정상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사업의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크다면, <u>보조사업보다는 출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u>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보조사업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으며, <u>출연 등의 방식이 더욱 적절할 것</u> 으로 판단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의 제한없이 연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u>출연금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u>

출연금과 보조금은 법적 근거, 사업의 용도 및 정산 등 관리체계와 재량의 정도에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데, 특히 보조금 예산은 지속

적으로 감액될 수 있고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행정 지원인
 력 인건비·경상비(비품·자산취득, 4대 보험료 등) 반영이 곤란하기 때
 문에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출연금이 보조금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음.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교

구 분	출 연 금	보 조 금
정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일반법적 근거 (정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²⁾
개별법적 근거 (지원근거)	반드시 법률의 지원근거 필요 「국가재정법」 제12조 ³⁾	대부분 개별 법령에 “보조할 수 있다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로 지급근거가 명기되어 있으나, 반드시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용도지정 여부	기관출연금의 경우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사용, 사업출연금의 경우 사용용도 지정	반드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자의 재량여지가 없음
집행잔액 처리	사후정산하지 않으며 집행잔액은 집행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처리	사후정산 후 집행잔액은 국고 반환
이자수입 처리	집행기관의 자체수입 처리	국고 반환
사업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3년) →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감축 가능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⁴⁾, 자
 구노력을 위해 인건비·경상비 감축 등 지출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원이
 감소 추세이므로⁵⁾ 연구원의 역량 저하가 우려되고,

보조금 외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 과기부·통일부 등 타부처의 연구
 과제를 수행⁶⁾하거나(5년 58개) 비지식재산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5년
 12개) 등 고유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연구원 본연
 의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이며,

안정적 수입 기반이 없어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 있음.

최근 10년간 총수입 대비 보조금 및 자체수입 현황

(결산 기준, 단위 : 억,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총수입(A)	66	61	60	71	67	66	65	112	98	93
보조금(B)	54	52	47	48	50	45	42	42	43	43
자체수입(C)	12	9	13	23	17	21	23	70	55	50
보조율(B/A)	81.8%	85.2%	78.3%	67.6%	74.6%	68.2%	64.6%	37.5%	43.9%	46.2%
자체수입율(C/A)	18.2%	14.8%	21.7%	32.4%	25.4%	31.8%	35.4%	62.5%	56.1%	53.8%

* ('25) 연구원 53.8% >> 경인사연 소속 10.4%, 부처직할 연구원 11.2%, 과기연 소속 13%

자료: 지식재산처

4) ('16) 54억원 → ('20) 50억원 → ('26) 45억원

5) ('15) 91명 → ('17) 81명 → ('23) 70명

6) (과기부)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연구
 (통일부) 개성공단 추진 과정상의 사례별 평가 등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연구원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연구원의 안정적·자율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기관운영출연금 정산·처리는 연구개발출연금과 달리 통일적인 규정이 없고 개별 법령 또는 주무부처의 처리지침에 따라 규율하므로,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자체 정관 및 규정을 마련 및 적절한 내부 통제를 통해 출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

연구개발목적기관 출연 사례

(2026. 3.월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23)		연구개발목적기관(4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25)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4)		
기 관 명	출연 근거	기 관 명	출연 근거	기 관 명	주무부처	출연 근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기초과학연구원	과기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기획 가원	과기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국토연구원	○	한국나노기술원	과기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안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산업연구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	○
한국한의학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통일연구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기후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국방과학연구소	방사청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방기술품질원	방사청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부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보건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건부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기부	○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재처	x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
한국재료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수부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수부	○
안전성평가연구소	○	한국행정연구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 관	기후부	○
세계김치연구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후부	○
		한국환경연구원	○	(재)차세대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기상청	○
		건축공간연구원	○			

자료: 지식재산처